

● 제333회 ●
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시립영보노인전문요양원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의안번호 : 2659)

2025. 11. 26.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안번호 2659

I . 제출자 및 제출경과

- 가. 의안번호 : 2659
- 나.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 다. 제출일 : 2025년 3월 31일
- 라. 회부일 : 2025년 4월 2일

II . 제안이유

- 가. 서울특별시 영보노인전문요양원은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사회복지시설로서,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에서 2016년 1월 20일부터 수탁하여 운영중이나 재계약이 2026년 1월 19일 만료될 예정임에 따라,
- 나. 민간위탁의 적합성, 지속 필요성 및 타당성 등에 대한 재위탁 적정성 심의 결과(2025년 제2차 조직담당관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에서 적정으로 결정되었으며,
- 다.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법인에 민간 위탁하여 양질의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3에 의거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III.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시립영보노인전문요양원 관리 및 운영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추진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 제1항(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3항 및 제4항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및 제6조 제1호

- 추진 필요성

- 노인요양시설은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임.

- 노인요양시설 운영은 인권보호, 자기결정, 자립생활, 재가요양 우선, 사례관리, 비밀보장, 기록 및 공개, 사회통합, 전문서비스와 효율성, 부당청구 금지, 영리목적의 알선행위 등의 금지 등의 서비스 제공의 기본원칙 준수와 노인의 특성과 성향에 맞는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이 필요함.

- 따라서 노인요양시설 운영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현장 경험이 있는 전문 법인에게 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다. 위탁 대상 사무 등 위탁 범위

- 시설보호대상 중증 치매·중풍 노인 등의 입소보호

- 입소노인의 인권보호, 건강관리, 급식위생, 안전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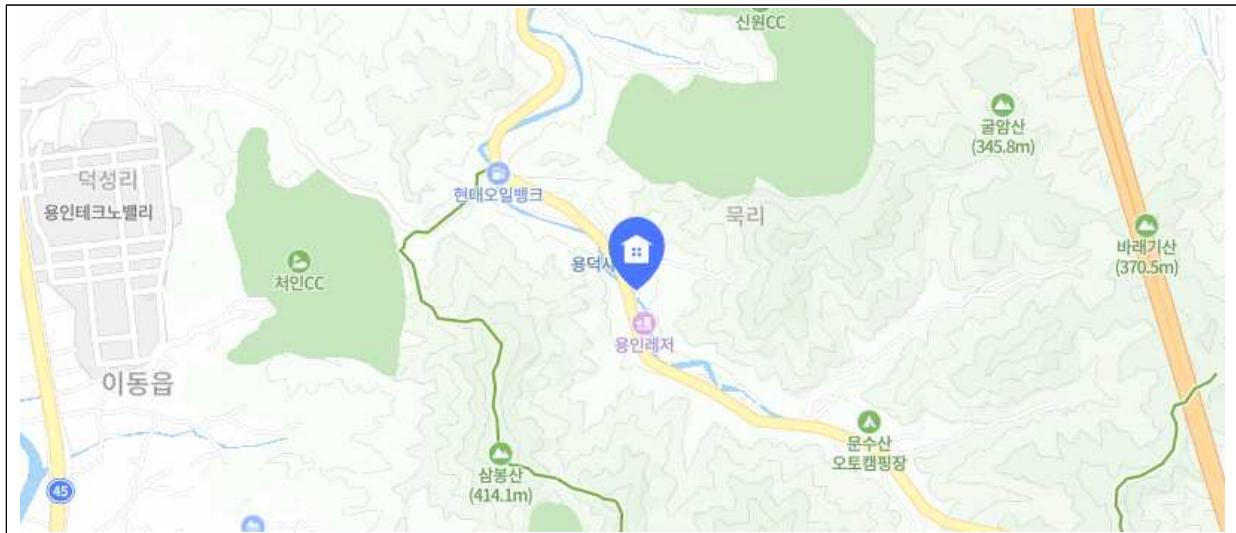
- 상담·사회교육, 기능회복, 복리후생

- 시립영보노인전문요양원 관리, 회계 규정 준수 등 운영 전반

- 기타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라.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

- 소재지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이원로 483
- 시설규모 : 대지 29.583m², 면적3,138.53m² (지하1층, 지상4층)
- 준공일자 : 2004.4.13.
- 이용대상 : 장기요양시설입소등급의 여성 어르신
- 위치도



○ 민간위탁 추진현황

- 1차 : 2005.1.20. ~ 2008.1.19.(3년, (재)천주교성모영보수녀회유지재단)
- 2차 : 2008.1.20. ~ 2011.1.19.(3년, (재)천주교성모영보수녀회유지재단)
- 3차 : 2011.1.20. ~ 2013.1.19.(3년, (재)천주교성모영보수녀회유지재단)
- 4차 : 2014.1.20. ~ 2016.1.19.(2년, (재)천주교성모영보수녀회유지재단)
- 5차 : 2016.1.20. ~ 2021.1.19.(5년,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 6차 : 2021.1.20. ~ 2026.1.19.(5년,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마. 민간위탁기간 : 5년 (2026.1.20. ~ 2031.1.19.)

바. 수탁자 선정방식 : 재위탁

사. 소요예산 : 512백만원('25년 시비 기준, 전체예산 2,477백만원)

아.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

※ 주변시설 및 건물 배치도

구분	시설명	시설종류	수탁법인	입소인원
시립	영보자애원	노숙인요양시설	사회복지법인 수효사효림원	260명(여성)
시립	영보정신요양원	정신요양시설	사회복지법인 수효사효림원	158명(여성)
시립	영보노인전문 요양원	노인요양시설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48명(여성)



IV.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1항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 2
- 「노인복지법」 제34조의 1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6조
- 「서울특별시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4조의 3

V. 검토 의견 (수석전문위원 임영미)

1 동의안 제출 개요

- ‘시립영보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민간위탁 협약기간이 2026.1.19. 만료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민간 위탁 절차¹⁾를 추진하기 위해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음.

〈민간위탁 재위탁·재계약〉

재위탁 · 재계약 (「서울특별시 시립 사회복지시설 위탁 관리지침(23.6.)」)

- 재위탁 : 민간위탁하여 운영 중인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
- 재계약 : 민간위탁 운영 중인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1회만 가능)

-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8조 2)에 의해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를 시행하고 있으며, 해당 평가에서 75점 미만 시 해당 수탁기관과는 재계약이 배제됨.

1)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 규칙에 규정된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수탁기관”이란 시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 “위탁사무”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사무를 말한다.
- “재위탁”이란 기존 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공개모집으로 다시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 본 사무는 위탁 기간의 지도·감독 결과, 사회복지시설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회에 한하여 재계약이 가능하며 재계약 1회 후 재위탁을 추진함.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3년마다 실시하는 장기요양기관 정기 평가 결과²⁾ 60.10점을 기록함.

○ 시립영보노인전문요양원

- 소재지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이원로 483
- 개관일자 : 2003.7.1.
- 시설규모 : 대지 29.583㎡, 면적3,138.53㎡ (지하1층, 지상4층)
- 위탁 대상 사무 등 위탁 범위
 - 서울시 거주 만60세 이상 어르신 대상
 - 노인복지를 위한 상담·사회교육·기능회복·재가노인·복리후생·지역복지사업
 - 기타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 위탁기간 : 5년 (2026.1.20. ~ 2031.1.19.)
- 선정방식 : 재위탁
- 소요예산 : 512백만원(2025년 시비 기준, 전체예산 2,477,000천원)

2 동의안 대상 사무에 대한 검토

1. 시립영보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 현황

- 시립영보노인전문요양원은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하여 민간위탁 운영 중인 사회복지시설로서, 현 수탁법인인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의 수탁기간이 료 (2026.1.19.)됨에 따라 신규 수탁법인을 선정하여 협약을 통해 5년간(2026.1.20.~2031.1.19.) 재위탁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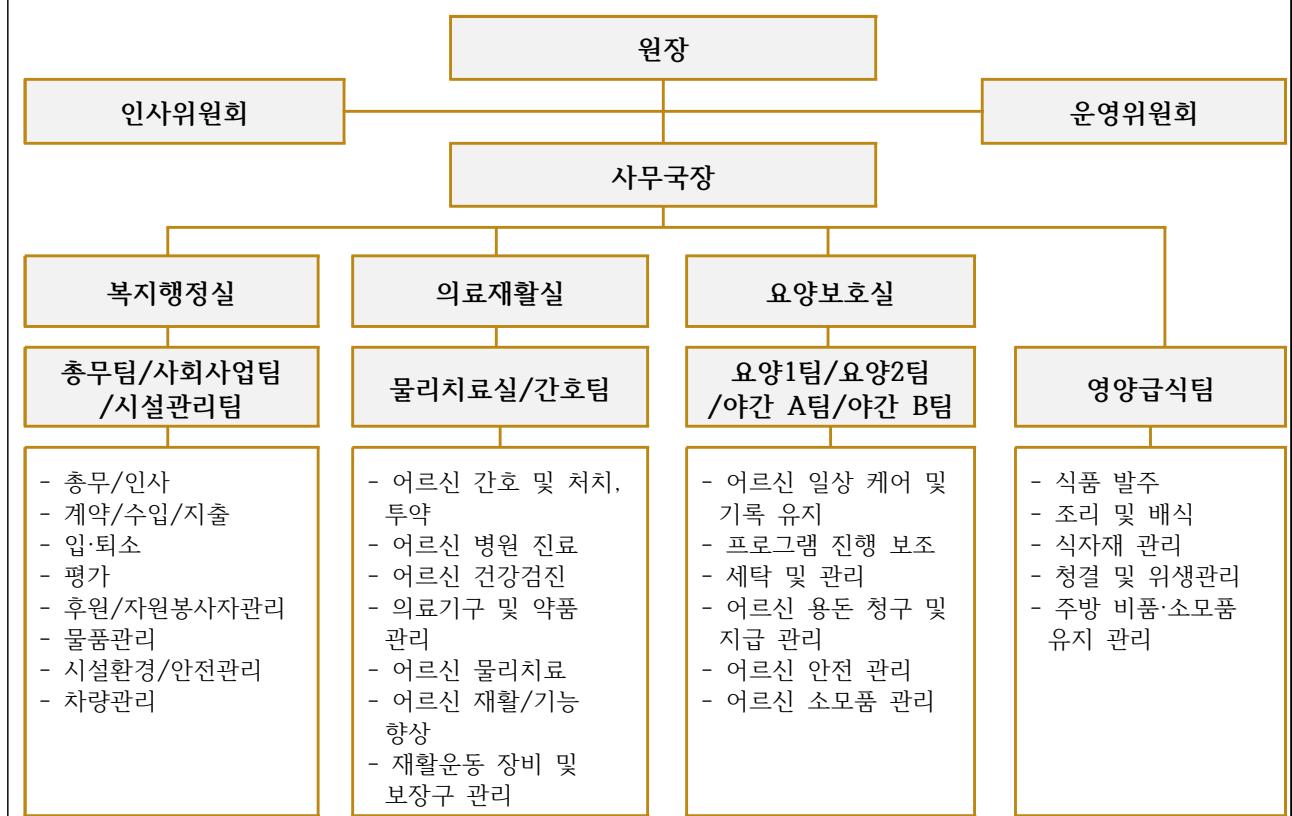
2)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종합성과평가 대상 사무) ①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위탁사무는 연간 사업비 5억원 이상인 사무로 한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별도의 평가를 하는 사무는 그 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

□ 시립영보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 추진 경위

구 분	위탁기간	법인명	선정방법	비고
최초위탁 (3년)	2005.1.20. ~ 2008.1.19.	재단법인 천주교성모영보수녀회유지재단	수의계약	영보자애원(여성 노숙인시설에서 기능분화)
1차 위탁 (3년)	2008.1.20. ~ 2011.1.19.	재단법인 천주교성모영보수녀회유지재단	재계약1	
2차 위탁 (3년)	2011.1.20. ~ 2013.1.19.	재단법인 천주교성모영보수녀회유지재단	재계약2	
3차 위탁 (2년)	2014.1.20. ~ 2016.1.19.	재단법인 천주교성모영보수녀회유지재단	재계약3	
4차 위탁 (5년)	2016.1.20. ~ 2021.1.19.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재위탁	
5차 위탁 (5년)	2021.1.20. ~ 2026.1.19.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재계약1	

□ 시립영보노인전문요양원 조직현황

○ 조직현황 : 3실 10팀



□ 시립영보노인전문요양원 인력현황

(2025.7월 말 기준)

인원	원장	사무국장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사무원	요양보호사	조리원	위생원	관리인
37명	1	1	1	3	1	1	1	23	3	1	1

- 종사자 인력 구성의 고령화는 요양원 운영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되는 구조적 문제로, 현장 인력의 다수가 50대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어 업무 효율성과 긴급 대응 능력의 저하 우려가 큼.
특히 신체적 부담이 큰 돌봄 업무 특성상 고령 인력에 집중된 인사 구조는 장기적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와 함께 인력 재생산의 단절을 초래할 수 있기에 신규 인력 유입을 위한 계획을 세워 장기적으로 인력 수급에 대한 체계적 계획이 필요할 것임.

□ 시립영보노인전문요양원 입소자 현황

(2025.7월 말 기준)

구분	연령별현황					요양등급별현황						
	계	70세 미만	70세 이상	80세 이상	90세 이상	100세 이상	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48	4	15	15	13	1	48	11	8	14	7	-	8

※ 입소자 전원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여성임.

※ 정원 84명

□ 예산 및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	예산액	집행액	미집행액	주요사유
2022년	2,933	2,210(75.4%)	723	기능보강사업비 교부지연, 전액 이월
2023년	3,132	2,245(71.7%)	887	이월기능보강 입찰지연, 일부 공정연계 (옥상방수공사지연→냉난방기설치지연)
2024년	3,806	3,399(89.3%)	407	기능보강공사지연으로 공사비 일부 25년 지급
2025년 (4월 말 기준)	2,477	922		-

※ 예산액 : 민간위탁금, 기능보강사업비, 법인 전입금, 후원금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

- 결산서에 따르면 자산취득비 및 시설장비유지비가 포함된 재산조성비가 주로 불용되어 집행율이 낮은 것으로 확인됨. 이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옥상방수공사와 냉난방기 교체등 기능보강사업의 공정이 지연되어 차기년도로 이월되었음을 설명함
- ‘24년 기준 집행률은 89.3%로 3년간 이어진 지속적인 예산 집행률 저조는 기관의 계획 수립 및 실행력 부족을 단적으로 보여주며, 수요 예측의 부정확성과 사업 추진력의 미흡함을 나타내고 있음.
- 이는 단순히 예산의 불용액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어르신을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 기회의 상실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예산 집행이 미흡한 사유와 내용을 확인하여 복지서비스 제공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 주요 운영실적

(단위:명)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4월 말)	
	계 획	실 적	계 획	실 적	계 획	실 적	계 획	실 적
합 계	553,593	528,169	622,000	288,758	679,926	553,315	821,332	188,311
프로그램서비스	6,444	5,151	6,053	3,224	8,209	6,094	9,360	2,411
일상생활지원사업	306,976	290,909	375,888	169,469	439,972	335,972	395,240	57,180
위생관리사업	36,708	35,850	37,504	17,088	37,232	33,632	195,600	63,337
의료서비스	81,611	78,343	85,820	42,309	85,729	83,409	105,842	29,845
물리치료	4,264	3,444	3,220	1,261	3,120	2,398	3,600	1,680
영양급식사업	117,590	114,472	113,515	55,407	105,664	91,810	111,690	33,858

- 의료서비스 제공 실적이 ‘22년부터 지속적으로 목표 대비 저조하다는 점은 중증 치매·중풍 노인에 대한 입소 보호하고 있는 노인전문요양원이라는 시설의 특성을 고려할 때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이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의료서비스의 실적 저조는 입소 어르신 감소*에 따른 서비스 대상자 감소에 따른 영향이 있으며, 특히 ’23년은 방문간호 협약기관의 수익 악화로 사업이 중단되어 저조하였다고 설명함

* 입소어르신 변동: ’22년 66명→ ’23년 65명 → ’24년 56명 → ’25년 7월 48명

□ 기타 운영성과

- 어르신 욕구 중심의 개별화된 서비스 제공을 통해 어르신의 신체, 정서, 심리적 안정감을 증대시켜 노년기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였음.
- 일 2회 오전, 오후 인권 방송을 통해 노인 인권 및 학대 예방 의식 고취에 앞장섰음. ‘25년 현재까지 노인학대 신고 건수 없음.
- 요양원 내에 노인 인권 관련 현수막 부착 및 노인 인권 캠페인을 통한 시설 노인의 인권을 보호하였음.
- 직원의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 참여를 통한 업무 이해도 상승으로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였음.
- 급여 제공 부서의 사례 회의를 통해 어르신의 욕구 파악 및 어르신의 문제 행동 대처 능력을 향상시켰음.
- 다양한 지역사회 기관과의 MOU를 통한 지역사회 연계사업 운영
- 적극적인 지역사회 자원 개발을 통한 후원금이 증가함.

2. 시립영보노인전문요양원 성과평가 결과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한 '21년 장기요양기관 시설평가³⁾에 따르면 기관운영 · 환경및안전 · 수급자권리보장 등 4개 부문에서 D(보통) 등급으로 평가됨.
 -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는 '노인장기요양법' 제54조에 따라 3년 주기로 실시하나 코로나19로 인한 시설평가 연장으로 '21년 4월부터 '22년 11월까지(약 19개월간) 진행됨. 올해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가 진행될 예정으로 '21년 평가결과서를 제출함.

〈2021년 시립영보노인전문요양원 평가결과 통보서〉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 통보서 (정기)

장기요양기관명	서울시립 영보노인요양원	장기요양기관번호	11159000178
급여종류	노인요양시설(개정법)	대표자	정상율
평가년도	2021	평가등급	정기평가 D(보통)

구분	총점	기관운영	환경및안전	수급자권리보장	급여제공	제공결과	가점
환산점수 (배점비중)	100.00	15.00	28.00	12.00	35.00	10.00	
점수	60.10	7.75	23.00	6.00	15.00	8.35	
전체평균	83.56	11.83	26.13	9.23	27.86	8.49	

- 기관 정기 평가에서 나타난 전반적인 낮은 평가점수를 통해 운영 전반의 질적 수준이 기준에 미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평가 항목 여러

3)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종합성과평가 대상 사무) ①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위탁사무는 연간 사업비 5억원 이상인 사무로 한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별도의 평가를 하는 사무는 그 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

항목에서 평균 이하의 점수를 기록한 것은 기관 운영 체계 전반에 대한 구조적 재검토가 필요함을 시사함. 특히 이러한 공식적인 외부 평가에서 부진한 점수는 기관운영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기에, 향후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 및 개선을 위한 행정적 점검 및 컨설팅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요양시설평가 대상 및 평가 내용>

<표1-2-1> 평가지표 분류

대분류(5개영역)	중분류
기관운영	• 기관관리, 인적자원관리, 자원 활용
환경 및 안전	• 시설 및 설비관리, 위생 및 감염관리, 안전관리
수급자권리보장	• 수급자 권리, 수급자 존엄성
급여제공과정	• 급여개시, 급여계획, 급여제공
급여제공결과	• 수급자 상태, 만족도 평가

<표1-2-2> 대분류 영역별 환산점수(배점비중)

(단위: 개, 점)

구분	전체			기관운영			환경 및 안전			수급자 권리보장			급여제공과정			급여제공결과				
	문	항	점	수	문	항	점	수	문	항	점	수	문	항	점	수	문	항	점	수
노인요양 시설	50	100	100	12	15	15	12	28	28	5	12	12	15	35	35	6	10	10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	48	97	100	11	14	15	12	28	28	5	12	12	14	33	35	6	10	10		

*출처:2021년 장기요양기관(시설급여) 정기평가 결과보고서

- ‘25년 장기요양기관 시설평가가 진행중으로 평가 결과가 통보되지는 않았으나 지표내용 및 평가기준을 통해 77.91점 이상 결과로 C(70점 이상)등급을 예상하고 있음

※ 3개 항목(관절구축(1점), 장기근속(1점), 보호자 만족도(3점)) 추가 평가 예정

<'25년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요양시설평가 평가조사표 요약>

평가영역	세부영역	평가지표	배점	평가점수
	합계		97	77.91
기관운영	기관관리	운영규정	1	1
		사업계획 및 평가	2	2
		운영위원회	3	1
		직원교육	2	2
		직원건강관리	4	3
		직원권익향상	3	3
		직원인권보호	2	2
		질향상노력	1	0.6
	안전환경관리	안전 쾌적	3	2.5
		낙상예방환경	3	2.5
		재난상황대응	2	2
		시설안전	2	2
수급자존중	수급자 권리	수급자(보호자)	3	3
		가족및 지역사회	2	1.63
		수급자의 권리	3	3
		개별욕구존중	2	2
		야간보호	2	2
		정보제공	1	1
		노인인권보호	3	1
		생애말기돌봄	2	2
	수급자건강	응급상황대응	2	1.5
		감염관리	2	1.88
		수급자건강관리	2	1
서비스제공	서비스계획	통합적 사정	2	1.5
		급여제공계획	2	2
	서비스제공	구강관리	2	1.5
		목욕서비스	2	1.5
		배설관리	2	2
		욕창예방및관리	4	2
		투약및약품관리	3	0.6
		신체기능프로	2	2
		인지기능프로	2	1.6
		여가활동프로	2	0.8
		기능회복훈련	2	2
	서비스결과	기능회복훈련	3	3
		관절구축예방	1	0
		급여제공결과	2	2
		수급자상태	2	1

	간호및의료서비스	2	2
	체중관리	2	2
	백신접종률	1	1
	욕창회복관리	2	2
만족도평가	장기근속현황	1	0.8
	식사(간식)제공	4	3

□ 지도감독결과

연도	지적사항	조치결과
2024.11	- 결산서 미제출 - 권고사항 : 미사용 신용카드해지, 식자재 경쟁입찰시 발 표기회 제공	조치완료
2024.7	- 채용시 공고기간 준수 - 최저임금 미게시 - 시간외근로, 휴게시간 미부여	조치완료
2023.12	- 예결산안 공고일자 기한 넘겨 공개 - 물품대장 미등재	조치완료
2023.6	- 지적사항 없음	
2022.11	- 관리소홀	조치완료
2022.6	- 예산초과 지출과목 발생 - 시설예산 미공고 - 법인전입금 미구분	조치완료

- 최근 3년간 실시된 지도감독 및 민간위탁 현장컨설팅 진단결과 결산 서 미제출, 채용 시 공고기간 미준수, 최저임금 미게시, 물품대장 미 등재 등이 지적되었으나 조치완료된 것으로 확인됨.
- 지적사항에 대해 조치 완료는 되었다고 하나, 지도점검 결과에서 회 계 및 운영 관리 지적 사항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은 행정적 신뢰성 저하뿐만 아니라, 기관의 투명성과 공공성 확보라는 민간위탁 운영의 기본 목적에도 어긋나는 사안임. 따라서, 같은 유형의 회계 지적이 반 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개선 조치와 함께 내부 점검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할 것임.

- 2005년 영보자애원에서 시설 기능분화 하여 운영되고 있는 영보노인 전문요양원은 65세 이상의 여성 국민기초생활수급자만 거주하고 있음. 신규 입소자가 적고, 기존의 입소자가 사망하거나 퇴소하면 입소 인원이 줄어드는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어 시설 현원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음.

□ 입소자 현황

(단위:명)

연도	22년	23년	24년	25년
현원	66	65	56	48
입소자	11	5	4	2
퇴소자	12	6	12	11

기관 연혁

- 영보자애원(여성노숙인시설) 설립(개원) : 1985.8.1.
 - 민간위탁 개시 : (재)천주교수원교구 (1985.8.1.~1995.7.31.)
 - 시립남부부녀보호지도소 800명 이송(1985.8.1.) 추가 200명 이송(1985.12.)
- 위탁법인 변경((재)천주교성모영보수녀회) : 1989.11.18.
 - 위탁기간 : 1989.11.18. ~ 2016.1.19.
- 영보자애원 시설 기능분화

: 2005.2.1.

(25.7월 말 현재)

시설명	유형	수탁법인	정원	현원	2025년 예산
영 보 자 애 원	노숙인시설	사회복지법인 수효사효림원	400명	260명	7,678백만원
영 보 정 신 요 양 원	정신요양시설		170명	158명	3,001백만원
영 보 노 인 요 양 원	노인요양시설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84명	48명	512백만원

- 위탁법인 변경(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 : 2016.1.20.
- 장기요양기관 지정 : 2016.2.13.

332회 임시회 보고 운영 개선안

◆ 시설 통합운영방안 <중장기적 검토>

- 대상 : 영보 3개 시설(자애원, 정신요양원, 노인전문요양원)
- 검토배경 : 입소자 대부분이 무연고 고령층으로 신체적, 정신적 돌봄이 필요하다는 공통점, 통합 운영으로 흩어진 공간 효율적 활용, 유연한 인력 운영 등 효과성 도모
- 향후계획 : 복지실(복지재단)에서 수행중인 '노숙인 요양시설 운영·관리 효율화 방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여성재단, 해당 실국간 통합 가능성 관련 검토 추진 예정

◆ 25년 정기평가 결과(안)에 대한 조치 현황

- 기관 운영
 - (기록강화) 운영위원회 회의록 및 투약 기록 '25년 2분기부터 개선 운영
 - (프로그램) 치매전담실 및 전문요양실 미운영에 대한 개선계획 수립
 - (안전강화) 지하 프로그램실 안내 표지판 부착 완료 및 식당·지하 안전손잡이 설치
- 수급자 존중
 - (가족 및 지역사회 교류) '25년 2분기부터 가족 참여 생신 장치 신규 추진
 - (인권보호) 시설 종사자 중 교육기간 미출근자 별도 교육 시행
 - (응급상황 대응) 흡인기 및 기도 확보 장치 추가 구비 완료
- 서비스 제공
 - (목욕서비스) 어르신 입퇴원, 당일 컨디션 난조로 목욕서비스 제공 불가시 기록 관리 철저
 - (투약 기록 강화) 수급자 투약 잔량 기록 관련 점검일지 마련하여 관리·운영
- 서비스 결과
 - (사례관리) 사례관리 대상자 선정 및 회의 진행하여 결과 반영하는 등 체계적 개선

◆ 예산 집행 실적 저조 ⇒ 기능보강 예산 적기 집행하여 집행률 제고

- 기능보강 예산 편성·집행 관리 철저, 이월 예산 최소화
- 회계 투명성 강화, 컨설팅 및 지도·점검 관리 철저

◆ 입소자 대비 종사자 조정

기준일	입소자 수	종사자 수	비고
‘25.2.25.	51명	45명	
‘25.4.30.	50명	40명	요양보호사 5명 퇴사
‘25.7.31.	48명	37명	요양보호사 2명, 관리인 1명 퇴사

333회 정례회 보고 운영 개선안

◆ <단기> 공고기관, 지역사회연계 및 적극적 홍보 통한 입소율 상향 개선

- 종합사회복지관, 자치구 등 연계, 수급자 및 노숙인 대상 수요 발굴
- 용인시 복지관, 동주민센터 연계, 인근시설(장애인, 정신요양원) 전원 협의 등

◆ <장기> 영보자애원(노숙인요양시설)과 통합운영, 영보노인요양원 규모 확대

- 시립 여성 노숙인 요양시설 2개소의 입소자 대상 적극적 전원 조치
 - 영보자애원, 여성보호센터 입소자 중 병원입원자 및 고난도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를 우선으로 장기요양 등급 판정 등의 절차를 거쳐 단계별 전원 조치
- 영보자애원 노숙인 기능 축소, 잔여 공간의 요양원 용도 전환 추진
 - 여성 노숙인의 고령화·중증화에 따라 요양원으로 전원조치 필요
 - 영보자애원 입소 규모 축소가 예상됨에 따라 장기적으로 자애원 건물 상당부분 용도 전환 예정(노숙인요양 → 노인요양)

3 민간위탁의 타당성 검토

- 시립영보노인요양원의 사무는 노인 및 복지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전문 기관의 노하우를 이용하여 고품질 서비스 개발 및 제공 운영을 위한 사무이며, 이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 민간위탁 조례」 제6조 제1호에 따른 민간위탁 대상 사무에 해당함.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 또한 증가하는 노인인구의 다양하고 복잡한 복지욕구 대응을 위해 장기적·지속적인 서비스 확대가 필요하기에 노인의 특성과 여건에 따른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한 전문성과 풍부한 현장 경험을 갖춘 전문 기관에 위탁운영은 적합할 것으로 판단됨.
 - 시설보호대상 중증 치매 중풍 노인 등의 입소, 돌봄 보호, 시설 운영에 따른 각종 프로그램이 개발, 운영, 입소 이용 노인 및 시설의 안전 관리 등 노인들을 위한 통합서비스로서, 인력·예산절감 등 행정능률 향상 측면에서 직영보다 위탁 방식이 적합함.

□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 적정

위탁사무명	유형	현수탁법인	위탁예정기간	심의 결과
시립영보노인전문요양원 관리 및 운영	재위탁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5년 이내 ('26.01.20~'31.01.19)	적정

4 종합의견

-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 사무를 연장하고 신규 법인에 재위탁을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각 시설의 설립 목적과 역할에 따라 전문성, 공공 서비스의 지속 필요성, 예산 절감, 서비스 수요에 대한 신축적 대응의 확보, 경쟁력 강화 등의 사유로 지속해서民間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임.
- 동의안에 대한 위탁 사무는 치매 노인의 특성과 여건에 따른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한 전문성을 요하는 사무로 풍부한 현장 경험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은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 하겠음.
- 신규위탁법인을 선정하는 재위탁 동의안이라고는 하나, 최근 3년간 예산액 대비 집행액 집행율이 낮고('22년 75.4%, '23년 71.7%, '24년 89.3%), 장기요양시설 평가등급(D(보통) 등급, 총점 60.10 점)이 높지 않았으며, 입소자 현원이 꾸준히 줄고 있는 문제로 재위탁 동의안이 제출된 이후 세차례(330회, 331회, 332회) 보류되었음.
- 이에 대해 해당 부서에서는 중장기적으로 여성 노숙인요양시설 운영 효율화 방안을 검토하여 보고하고, 영보자애원(노숙인요양시설)과 영보노인요양원을 통합운영하여 영보노인요인요양원의 규모를 확대하는 개선안을 제출함.

전문위원 김소은	02-2180-8144
입법조사관 김진영	02-2180-8140